

# 연구 용역사업 수행 규칙

제 1 조(목적) 이 규칙은 우리학회가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의 대외적 신뢰성 향상과 연구 내용의 수월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제 2조(적용범위) 이 규칙은 외부로부터 수탁하거나 우리학회 예산으로 직접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에 적용된다.

제 3조(수탁사업내용) 수탁사업인 경우에는 연구내용이 우리학회의 설립취지에 부합되어야 한다.

제 4조(연구진의 구성과 자격)

- ① 연구진은 책임연구원, 연구원, 보조연구원을 기본으로 구성하며, 연구사업의 규모, 기간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 책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.
- ② 연구진은 우리학회 회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우리학회에 해당분야 전공자가 없거나 보조연구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 5조(책임연구원의 자격과 선임)

- ① 총괄 책임연구원 또는 책임연구원(이하 “책임연구원”이라고 칭함)은 사계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, 특히 연구분야별로 연구진의 통솔과 연구기획, 조정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.
- ② 책임연구원은 회장이 선임하고, 이 경우에 학회 분과위원회, 전문성, 지역성을 최대한으로 고려해야 한다.
- ③ 단, 의뢰자가 책임연구원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의뢰자의 뜻에 따라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며, 지정된 회원이 책임연구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장은 의뢰자와 협의하여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 6조(책임연구원의 역할과 책임)

- ① 책임연구원은 연구진의 구성과 변경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.
- ② 책임연구원은 연구사업의 진행, 성과의 신뢰성, 연구기간의 엄수 등 계약서 상에 규정된 모든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.
- ③ 책임연구원은 수탁용역사업 종료후 1년 이내에 사업수행성과에 대한 개요를 학회지 혹은 학회논문집에 게재하여야 한다.

제 7조(연구사업의 분담)

- ① 학회 회원은 동시에 2개 이내 사업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다만, 위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장의 서면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.

제 8조(학회의 신뢰성 향상)

- ① 연구의 집행과 그 성과에 대하여 우리학회의 신뢰성과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장은 책임연구원에게 연구내용이나 수행방법 등에 관한 발표를 연 2회 이내 한도로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이 때 책임연구원은 의뢰인과 계약조건에 관계없이 회장의 요구에 따라 발표의 의무를 갖는다.

제 9조(자문위원회) 수탁연구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1996. 1. 1 이후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0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04년 2월 9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